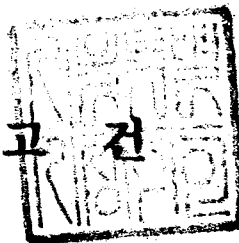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1. 개정이유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 : 2000년 → 2002년(2년 연장)
- 나. 여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직렬 확대 : 행정직 → 기술직까지(2000년부터)
- 다.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직급 확대 : 7급 이상 → 8·9급까지
- 라. 여성채용 상한목표비율 상향조정
 - 5급 : 20% 현행유지
 - 6·7급 : 2000년(20%) → 2001년(23%) → 2002년(25%)
 - 8·9급 : 2000년(20%) → 2001년(25%) → 2002년(3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여성의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여성채용목표제실시지침

I. 목 적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함) 제51조의2(여성의 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에 시행에 필요한 여성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II. 적용 대상시험

1.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
2. 시험종류
 -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나. 8·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III. 여성채용 목표

1. 시험실시단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은 다음과 같이 함

구분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급이상(연구·지도관)		20%	20%	20%	20%
6·7급(연구·지도사)		20%	20%	23%	25%
8·9급		20%	20%	25%	30%

2. 시험실시단위별 여성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윗표의 해당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IV.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1)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7·8·9급의 경우는 제외) 특점한 자중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대상자를 결정
- (2)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제1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 (3)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7·8·9급의 경우는 제외) 특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여성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키지는 아니됨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특점한 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여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제2차 시험

- 가.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특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대상자를 결정

나.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제2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다.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하고
-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

- ⇒ 매 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합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대상자를 결정

나.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1·2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다.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하고
-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의 경우에는 합격선 -3,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처리 함

4. 통점자 처리방법

가.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 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 통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5.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여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위원에게는 여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

나. 제2차시험(제1차·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시험)에서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 -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여성채용목표비율 - 제2차시험합격선 이상의 여성합격자)범위내에서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중의 여성비율이 제2차시험 합격자중의 여성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제Ⅲ항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여성이 선발되도록 조치

V. 시행시기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되, 기술직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397 / 전송 (02)3707-9399
 농수산유통과(서소문별관 902호) 과장 김정중 담당사부관 김철우 담당자 구대창

문서번호 농유 51550 - 1022

시행일자 '99. 10. 5 (3년)

(정유)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발		법무담당관	지시	
접수	일자	199. 10. 6	결재	
	번호	1024		
처리과			공발	
담당자		이순재	발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 발령 의뢰

1. 조직 05090-109('99. 2. 5)호 및 조직 05090-62('99. 1. 23)호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관련조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발령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방침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농수산유통과장 **김정중**

서울특별시축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개정('99.6.30)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내용이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일부규정을 구체화·명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내지 4호)

나. 중도매업 허가취소 사유 및 경매참가 거부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함 (안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장이 특별히 경매참여를 제한한 자

다. 실효성이 상실된 도매시장법인의 거래량 및 가격게시 조항을 삭제함 (안 제3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규제심사 : 제3~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필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연속 무실적 : 경고
3.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
4. 분기 중 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월

제2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8조(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2,000만원 (법인 8,000만원)으로 한다.</p> <p>② 시장은 중도매인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동일처벌이 최근 1년간 3회체인 경우에는 1단계 상위 처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 미달 : 주의 2. 2개월 연속 미달 : 경고 3. 3개월 연속 미달 : 업무정지 15일 4.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 	<p>제18조(최저 거래금액) ① -----</p> <p>-----</p> <p>-----</p> <p>② -----</p> <p>-----</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 무실적 : 주의 2. 2개월 연속 무실적 : 경고 3. 3개월 연속 무실적 : 허가취소 4. 분기 중 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0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월
<p>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①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6. (생략) 	<p>제20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①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p> <p>5 ~ 6. (현행과 같음)</p>
<p>제27조(정매참가 거부 및 단합금지) ① 도매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정매참여를 거부하거나 정매참여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시장이 특별히 정매참여를 제한한 자 	<p>제27조(정매참가 거부 및 단합금지) ①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33조(유동정보 공개 등) 도매법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3707-9397 / 전송 (02)3707-9399
 농수산물통과(서소문별관 902호) 과 장 김경중 담당사무관 김청우 담당자 구대창

문서번호 농유 51550 -
 시행일자 '99. 10.
 (경 유)
 발 율 내부질제
 참 조

보존기간		시	장	
공개여부		오소격오 조희제보담당관 김희상 법무담당관 심사필 축산위생팀장 김희우		
산업경제국장	심			필
농수산물통과장	김경중			
기안자	구대창	심사일	회	
심사자				

★◎

제 목 축산부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1. 조직 05090-109('99. 2. 5)호 및 조직 05090-62('99. 1. 23)호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관련조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제 2 안)

수 신 법무담당관

제 목 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 발령 의뢰

1. 조직 05090-109('99. 2. 5)호 및 조직 05090-62('99. 1. 23)호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개정 및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 관련조항을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발령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방침서 사본 1부.

2. 서울특별시축산부도매시장업무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끝.

농 수 산 율 통 과 장
 045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 (02) 731-6153 / 전송 731-6309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본관4층) 과장 : 정효성 사무관 : 신상철 담당 : 오세환

문서번호 조직 05090 - 109
시행일자 1999. 2. 5.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정 결	신용봉차장	1/11	지 시		
접	일자 시간	1999. 2. 08	결 재		오세환
수	번호	308			
처리과			공 람	신상철	[인]
담당자				신위인	[인]

제목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의거 제4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경제국 보완사항 및 교통관리실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관련부서에서는 필요 조치사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히 조례·규칙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 법령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상의 규제는 중앙부처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조속 정비완료
 - 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절차 이행후 3월말까지 정비 완료
 - 다. 자치구 소관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시주관과에서 정비대상목록을 각자치구에 공부하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첨부 :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장
(전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수신처 : 서과 01~70, 서본부 01~03, 서구 01~25

가축농산물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의 3건

의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	<p>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제36조)</p> <p>※양재동 양곡도매 제36조 노량진 수산부도매 제30조 축산부도매 제24조</p>	<p>○도매법인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p> <p>(1)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p> <p>(2) 업무정지 증명자</p> <p>(3) <u>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자.</u></p> <p>○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방해 및 경매·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안된다.</p> <p>※ 조례 제13조와 동일 규정임</p>	<p>○개 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항 제1호는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로 구체화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주로부터 농산물을 수탁받아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은 익일 출하주에게 결재한 후 중도매인과는 월 2~3회 정산하고있어, 출하주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정산 확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임 제1항 제3호는 삭제
2	<p>반입물품의 제한 (제55조)</p> <p>※양재동 양곡도매 제55조 노량진 수산부도매 제47조</p>	<p>○<u>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금지된 물품의 판매·수탁을 거부</u></p>	<p>○개 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으로 명확화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는 시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문구는 삭제

(관인생략)

서울특별시

☎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 (02) 731-6153 / 전송 731-6309
처리부서 : 조직제도담당관(본관4층) 과장 : 정효성 사무원 : 신상철 담당 : 오세량

문서번호 조직 05090 - 62

시행일자 1999. 1. 23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 정	일 자	시 간	지 시	
수 번호	197		결 재	
처 리 과			공 보	
담 당 자				

제목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1.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의거 제3차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산업경제국소관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따르실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2. 관련부서에서는 필요 조치사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속히 조례·규칙등 정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의 위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상의 규제는 중앙부처 법령개정과 연계하여 조속 정비완료

나.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규제는 필요질차 이행후 2월말까지 정비완료

다. 자치구 소관규제사무에 대하여는 시주관과에서 정비대상목록을 각자치구에 송부하고, 자치구에서는 시주관과와 협의후 서울시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첨부 :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산업경제국소관) 1부. 끝.

서울특별시

수신처 : 서과 01~70, 서본부 01~03, 서구 01~25

	규제사유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7	<p>중도매업의 허가 (제20조)</p> <p>※ 양재동 양곡 제20조 노량진 수산부 제18조 속산부 제16조</p>	<p>○중도매업허가신청서 시장 에게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이력서 및 호적 등본 (2) 은행의 잔고증명서 (3) 정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 명부 (5) 임원의 이력서 및 호적 등본 (6)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대조표 (7)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p>○사장은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중도매업허가를 추천</p> <p>○중도매인은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사무실)에 게시</p>	<p>○존 치</p> <p>→ 개편</p>
8	<p>최저 거래금액 (제22조)</p> <p>※ 양재동 양곡 제22조 노량진 수산부 제20조 속산부 제18조</p>	<p>○부류별 월간 최저금액 조례 제5조와 동일한 규 정임</p> <p>○전항에서 정한 최저거래금 액기준에 미달자에 주의, 경고, 업무정지 및 허가취 소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개월미만: 주의 (2) 2개월 연속 미달: 경고 (3) 3개월 연속 미달: 업무 정지 10일 (4) 3개월 연속 무실적: 허가 취소 <p>○제2항의 규정중 제(1),(2) 호는 시장이 조치</p>	<p>○존 치</p> <p>→ 개편</p>

연번	규제 사무명	규제 내용	정비 계획
9	<p>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제27조)</p> <p>※ 양재동 양곡 제27조 노량진 수산 제23조 축산 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매업의 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증금납부나 담보의 제공을 아니한 경우 ○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수산물 유통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농수산물을 거래하거나 수집출하한 경우 ○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중도매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6조의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적으로 경매입찰에 불참한 경우 ○ 시설을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한 경우 ○ 기타 관계법령 및 업무규정등을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p>※ 조례 제4조 2항과 동일 규정임</p>	<p>○ 존치</p> <p>→ 개편</p>
10	<p>매매참가인 등록 (제28조)</p> <p>※ 양재동 양곡 제28조 노량진 수산 제24조 축산 제2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사장에게 제출(매매참가인 변경신청서) <p>※ 조례 제6조와 동일 규정임</p>	<p>○ 폐지</p>
11	<p>매매참가인 등록취소 (제29조)</p> <p>※ 양재동 양곡 제29조 노량진 수산 제25조 축산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업자, 농수산물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등 수요자가 아닌자 ○ 매수대금, 기타 채무이행을 대만시 함으로써 거래관계에 현저한 손실을 끼친 때 ○ 거래실적이 6월 연속 없을 때 ○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한 때 ○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p>○ 폐지</p>

연번	규제사유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2	수집상 등록 (제31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수집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자는 14호서식 변경신청서는 15호서식으로 사장에게 제출	○존치
13	수집상 등록취소 (제32조) * 양재동 양곡 제32조 노량진 수산 제28조 축산 제25조	○농수산물의 출하업무외에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1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기타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존치
14	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제36조) * 양재동 양곡 제36조 노량진 수산 제30조 축산 제22조	○도매법인은 다음 각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됨 (1) 거래 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증인자 (3) 사장이 특별히 경매참가를 제한한자. * 조례 제13조와 동일 규정임	○개선 - (3)호는 삭제하고 (1)호는 예치한 보증금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한 경우로 개선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15	자기재산매매 (제37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도매법인이 자기재산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제4호서식의 자기재산매매 결과보고서를 3일 이내 사장에게 제출 * 조례 제15조와 동일 규정임	○존치
16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제39조) * 양재동 양곡 제31조 노량진 수산 제27조 축산 제24조	○수의매매 할 수 있는 품목 (별표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보증금을 납부 ○제3항에 의한 보증금 및 기타 상장의 품목거래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 조례 제15조와 동일 규정임	○존치

연번	규제사무명	규제내용	정비계획
17	유통정보공개등 (제47조) * 양재동 양곡 제47조 노량진 수산 제41조 축산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법인은 별지24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동계시 ○도매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동을 별지 25호, 26호 서식으로 익일 까지 거래보고서를 사장에게 제출 	○제 지
18	반입물품의 제한 (제55조) * 양재동 양곡 제55조 노량진 수산 제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금지된 물품의 판매·수락을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 선 - 생상 유해물품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구제화, 명확화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19	시설의 전대금지 (제61조) * 양재동 양곡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는 그 사용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장의 승인없이 전대나 타인이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조례 제9조와 동일 규정임 	○존 치
20	시설사용의 규제 (제65조) * 양재동 양곡 제6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의 감독, 재해예방, 교통정리, 보건위생상 필요시 ○시장질서를 해지거나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고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파손 하였을 때 ○사용료 기타 납부금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관계법규(와) 지시,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 조례 제11조와 동일 규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 선 - 도매시장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 공공적 이용제고,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나 구제화, 명확화하여 다음 심사시 보고
21	시설의 처분제한 (제67조) * 양재동양곡 제67조 노량진수산 제15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시설은 개설허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나 임대하지 못할 	○존 치

서울특별시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621 / 전송 731-6053
 인사행정과(시청본관4층) 과장 국운호, 사무관 유형태, 담당 이증식

문서번호 인사 12100-2014
 시행일자 1999. 10. 5.
 공개여부
 수신 법무담당관
 참조

선결	합류금 <i>향상보</i>	지시	
절	일자 99. 10. 6	결재	법무담당관 <i>2호</i>
수	번호 102	공발	법무담당관
처리과		공발	법무담당관
담당자	이 승재	심사일	
심사자			

제목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안 발령 의뢰

1. 행정자치부 운영12100 - 720(1999.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전의 지침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안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예규명 :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나. 개정 근거

○ 여성채용목표제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운영12100-720(1999.8.31))>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5부, 끝.

인 사 행 정 과 장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제1차 심사	1999. 10. 5	제15호
담당자	행정사담당부서	법무담당관
이승복	이은복	박승우

1. 개정이유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 : 2000년 → 2002년(2년 연장)
- 나. 여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직렬 확대 : 행정직 → 기술직까지(2000년부터)
- 다.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직급 확대 : 7급 이상 → 8·9급까지
- 라. 여성채용 상한목표비율 상향조정
 - 5급 : 20% 현행유지
 - 6·7급 : 2000년(20%) → 2001년(23%) → 2002년(25%)
 - 8·9급 : 2000년(20%) → 2001년(25%) → 2002년(3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여성의 합격)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여성채용목표제실시지침

I. 목 적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임용령”이라 함) 제51조의2(여성의 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채용목표제」가 적용될 시험의 종류를 정하고,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성채용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정하기 위함.

II. 적용 대상시험

1. 시험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시험단위
2. 시험종류
 - 가.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나. 8·9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III. 여성채용 목표

1. 시험실시단위별 여성채용목표비율은 다음과 같이 함

구분	연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5급이상(연구·지도관)		20%	20%	20%	20%
6·7급(연구·지도사)		20%	20%	23%	25%
8·9급		20%	20%	25%	30%

2. 시험실시단위별 여성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윗표의 해당비율을 곱한 인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

IV. 합격자 결정방법

1. 제1차 시험

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 (1)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7·8·9급의 경우는 제외) 득점한 자중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대상자를 결정
- (2)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제1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 (3)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7·8·9급의 경우는 제외)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여성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합격선에 든 남성을 탈락시켜서는 아니됨

나.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한 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여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음

2. 제2차 시험

- 가.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합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대상자를 결정

나.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제2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다.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하고

-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함

3.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4조제1항 단서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 매 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의 13합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대상자를 결정

나.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조치 없이 그 대상자 전원을 1·2차시험 합격자로 결정

다. 상기 합격대상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 매과목 4합이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과목 4합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합이상) 득점하고

- 전과목 평균득점이 5급이상의 경우에는 합격선 -3, 6급이하의 경우에는 합격선 -5점의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여성중 고득점자 순으로

-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처리 함

4. 동점자 처리방법

가.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중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 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처리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5. 제3차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가. 여성채용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시험은

→ 남·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시험위원회에는 여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

나. 제2차시험(제1차·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시험)에서 여성이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여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 -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여성채용목표비율 - 제2차시험합격선 이상의 여성합격자)범위내에서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

- 최종합격자중의 여성비율이 제2차시험 합격자중의 여성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

- 제한경쟁특별임용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또는 실기시험)에서 제Ⅲ항의 목표인원 이상으로 여성이 선발되도록 조치

V. 시행시기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되, 기술직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함.

서울특별시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621 / 전송 731-6053
 인사행정과(시청본관4층) 과장 국윤호, 팀장 유형태, 담당 이종석

문서번호 인사 12100- 2214

시행일자 1999. 10.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보존기간		시	장
보존		인사팀	
행정관리국장	전길	조직제도담당관 김호성	
인사행정과장	국윤호	법무담당관 심사필	
		인사기획팀장	
기안자	이종석	유형태	협조
심사자	양승주	심사일	10/5

제목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개정

1. 행정자치부 운영12100 - 720('99.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전의 지침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 예규명 :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나. 개정 근거

- 여성채용목표제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운영12100-720(1999.8.31))>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1부. 끝.

(제 2 안)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안 발령 의뢰

1. 행정자치부 운영12100 - 720('99.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전의 지침을 일부 수정·보완하고자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안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예규명 : 서울특별시 「여성채용

나. 개정 근거

○ 여성채용목표제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운영12100-720(1999.8.31))>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1부. 끝.

인 사 행 정 과 장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총무과장

제목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통보

1. 행정자치부 운영12100 - 720('99. 8. 31)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전의 지침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예규명 :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

나. 개정 근거

○ 여성채용목표제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운영12100-720(1999.8.31))>

붙임 1.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서구 01- 25

서울특별시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개정지침안

제시사	1999. 10. 5	제15호
담당자	인사팀장	인사팀장
이승복	이승복	이승복

1. 개정이유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여성인력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여성채용목표제」 실시지침중 적용기간연장, 적용대상범위 확대, 채용목표비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여성채용목표제 적용기간 연장 : 2000년 → 2002년(2년 연장)
- 나. 여성채용목표제 적용대상직렬 확대 : 행정직 → 기술직까지(2000년부터)
- 다. 여성채용목표제 적용직급 확대 : 7급 이상 → 8·9급까지
- 라. 여성채용 상한목표비율 상향조정
 - 5급 : 20% 현행유지
 - 6·7급 : 2000년(20%) → 2001년(23%) → 2002년(25%)
 - 8·9급 : 2000년(20%) → 2001년(25%) → 2002년(3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2(여성의 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음